

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항 : ①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6. 4. 30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4. 14. 기준</u> <u>2026. 3. 31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6. 4. 14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3. 31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3. 31. 기준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□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: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<u>2024.1 월 기준</u>	□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: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<u>2025.10 월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33.09%</u>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32.28%</u>
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환매수수료 부과 여 부 기재	〈신 설〉	※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제 11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 -	2026. 4. 14. 기준 2026. 3. 31. 기준
14.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 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 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부터 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(판 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 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 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 여 원천징수 합니다.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 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</u>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 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 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부터 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 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)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 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 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.

		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	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6. 4. 14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6. 4. 14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6. 4. 14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3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7기(2024.12.31) 제 26기(2023.12.31)	제 28기(2025.12.31) 제 27기(2024.12.31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3. 31. 기준</u>